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69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진선미 · 이수진 · 정태호
임호선 · 신정훈 · 임오경
이동주 · 윤관석 · 김경협
한병도 · 노웅래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은 규모가 104.4억 원에 이르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어 균형적인 소득분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

음.

이에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생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u>거주자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④ ----- ----- ----- ----- ----- ----- ----- ----- ----- ----- -----거주자(해당 과 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한다)----- ----- ----- ----- ----- ----- ----- -----

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u>100분의 40</u>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u>400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 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u>100분의 80</u> ----- ----- ---. ----- ----- ----- ----- <u>600만원</u> ----- ----- ----- -----.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